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2. 10. 9. (제 197 회)	

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(재무과)
제출연월일	2012. . .

1. 의결주문

“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무인민원발급기, 주민등록관리시스템,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에서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연계·구축하여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 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4조의3)
- 전자수입증지 사용 시 판매인 수수료 지급을 제외함(안 제19조)
-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 추가(안 제20조, 【별지 제11호 서식】)

4. 개정안 : 붙임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6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발취
 -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 경상북도 자치행정과-25176(2010.12.09.)
 - 지방세 제증명 『전자수입증지』 및 『전자서명』 적용 경상북도 세정과-3089(2012.03.06.)
-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.

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)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행정정보시스템(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방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증지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9조 단서 중 “계기”를 “계기 및 지방행정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)”을 “(계기 및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”를 “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【별지 제10호 서식】,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수입금은 【별지 제11호 서식】에 의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계기”를 “계기 및 지방행정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【별지 제11호 서식】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재무과	
연 락 처	(054) 950-6124

현 행	개 정 안
<p>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“결손”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<u>계기</u>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③ <u>계기 및 지방행정정보시스템</u>----- ----- -----<u>계기 및 지방행정정보시스템</u>----- -----</p>

【별지 제11호 서식】

수입증지요금지방행정정보시스템관리대장

월 일	금일까지 금 액(A)	전일까지 금 액(B)	금일결손 (C)		금일발생 (A-B-C)		결 재		
			매 수	금 액	매 수	금 액	담당자	계 장	과 장